

## '89 수입자금 지원제도 안내

수출입 은행법 제18조에 의거, 수출입 은행에서 아래와 같이 수입자금을 지원(융자)하게 되오니, 관련 회원 업체의 원자재 수급 원활화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989. 5. 25  
상 공 부 장 관

### 〈수입자금 지원대상 품목 및 절차〉

#### 1. 지원대상

##### 가. 수입거래

수출입 은행법 제18조의 중요물자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의한 주요자원의 수입거래

〈중요물자(12개 품목)〉

철광, 고철(\*), 동광, 전기동(\*), 동설(\*), 아연광, 아연괴(\*), 연광, 연괴(\*), 알루미늄, 알루미늄괴(\*), 목재 펄프(\*)

〈주요자원(42개 품목)〉

석탄, 철광석, 동광석, 원유, 원목, 양곡, 원면(\*), 원당(\*), 생고무(\*), 금광, 은광, 창연광, 주석광, 안티모니광, 수은광, 크롬광, 티타늄광, 망간광, 니켈광, 텅스텐광, 인광, 알루미늄광, 흑연, 운모, 석면(\*), 유황, 형석, 석회석, 규사, 우라늄광, 질코늄광, 암연(\*), 카리광, 백금광, 코발트광, 몰리브덴광, 마그네슘광, 금강석, 고령토, 사금, 사석, 사철

\*주: (\*)는 상공부 소관품목임 (12)

##### 나. 융자 매광 거래

• 수출입 은행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의한 주요자원 중 광물 자원

\*융자 매광 거래: 주요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의 자원개발 기업에 사전에 대여하고 그 댓가로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 개발된 주요자원을 수입하는 거래

#### 2. 지원규모 및 융자조건

가. 지원규모: 1,000억원

나. 대상자(차주)

• 중요물자 또는 주요자원 수입 거래의 국내 수입자 또는 광물자원 융자 매광거래로서 당해 거래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얻은자

#### 다. 융자 형식

• 원화표시 어음대출 또는 증서대출

#### 라. 융자 비율

• 중소기업: 수입 및 수입 선급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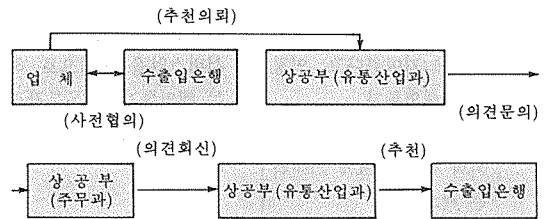
• 대기업: 수입 및 수입 선급 금액의 100분의 80 범위내

#### 마. 이자율 및 융자 기간

• 수입거래: 연 10% 및 1년

• 융자매광 거래: 연 9% 및 10년 이내 10년

#### 3. 융자 절차



### 〈융자지원제도 개선 내용〉

#### 1. 수출 자금 지원대상 품목 확대

##### 가. 추가확대 품목

- (1) 기계류와 전기기기 중 중요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정용, 사무용 품목(HS 제84류 및 제85류의 전 품목이 지원 가능하게 됨)
- (2) 철도용 이외의 차량 중 모터 싸이클 및 기타 차량(HS 제87류의 전품목이 지원 가능하게 됨)
- (3) 철강 및 동제품(HS 제72류 및 제73류의 품목)
- (4) 비철금속 제품(HS 제74류 내지 제83류의 품목)
- (5) 항공기와 동부품류(HS 제88류의 품목)
- (6) 광학기기, 정밀기기 및 의료용기기와 동부품류(HS 제90류의 품목)

##### 나. 추가확대 품목에 대한 융자 조건

	항공기	철강 및 철강제품	기 추 가 품 목	타
• 선수금률	15%	15%	20%	
• 융자비율	90%	70%	75%	
• 연불기간	10년	10년	5년	
• 대출이율	OECD Guide Line			금리 준용

**2. 해외투자 자금 지원대상 사업의 확대**

종 전	변 경
다음 지원대상사업만 지원	다음 지원금지 대상사업이외에는 모두 지원
<p>1. 철광, 동광 등 중요물자 또는 원유, 원면, 원목 등 주요자원의 확보에 기여하는 해외투자</p> <p>2. 외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해외투자</p> <p>3. 해외교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해외투자</p> <p>4. 수출입 시장의 확보 또는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하는 해외투자</p>	<p>1. 기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의 해외투자</p> <p>2. 단순히 배당금, 시세차익, 이자 등 만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의 증권이나 채권 등을 취득하는 해외 간접투자</p> <p>3. 금융업, 보험업 및 오락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주무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 예외)</p>

**3. 수입자금 지원대상 품목 및 용자비를 확대**

	변 경 전	변경후(추가품목)	비 고
지원대상 품 목	중요물자 : 철광, 고철, 동광, 전기동, 동철, 아연광, 아연괴, 연광, 연괴, 알루미늄, 알루미늄괴, 목재 펄프 주요자원 : 석탄, 철광석, 동광석, 원유, 원목, 양곡, 원면, 원당, 생고무	금광, 은광, 창연광, 주석광, 안티모니광, 수은광, 크롬광, 티타늄광, 망간광, 니켈광, 텅스텐광, 인광, 알루미늄광, 흑연, 운모, 석면, 유황, 형석, 석회석, 규사, 우라늄광, 질코늄광, 암연, 카리광, 백금광, 코발트광, 몰리브덴광, 마그네슘광, 금강석, 코령토, 사금, 사석, 사철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상의 주요자원 중 광물
용자비율	70%	중소기업 : 90% 기 타 : 80%	

**4. 지원대상 거래의 수출 결제방식 확대**

- 연계무역(counter trade) 방식의 수출거래도 지원 대상으로 함.  
지원대상 거래의 결제방식

변 경 전	변 경 후
수출가액이 원화 또는 외환 관리법상의 지정 영수통화로 결제되는 것일 것.	외국환 관리법상의 지정 영수통화 또는 현물로 결제되는 것일 것. (이 경우, 수출가액이 원화로 표시되는 거래를 포함)

**5. 용자지원 절차의 간소화**  
-예비 승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함.

예비승인 제도 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일람불 거래 및 지원대상 요건 부합거래에 대해서만 예비승인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플랜트 수출 거래 및 해외투자의 경우로서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예비 승인토록 함.</li> <li>•선박 수출 거래 등 기타의 경우에는 예비승인 제도 폐지</li> </ul>

수출자금 지원대상 품목

<p>산업시설(plant), 선박(HS 89류), 철도차량(HS86류)과 이를 위한 원료, 예비품, 부분품 및 부속품</p> <p>(1) 철강 및 동 제품과 그 부품류 (HS 제72류 및 제73류의 품목)</p> <p>(2) 비철금속 제품 (HS 제74류 내지 제83류의 품목)</p> <p>(3)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동 부품류 (HS 제84류 및 제85류의 품목)</p> <p>(4) 철도용 이외의 차량 및 동 부품류 (HS 제87류의 품목)</p> <p>(5) 컨테이너(HS 제8609호의 품목)</p> <p>(6) 항공기와 동 부품류(HS 제88류의 품목)</p> <p>(7) 광학기기, 정밀기기 및 의료용 기기와 동 부품류 (HS 제90류의 품목)</p> <p>(8) 철도차량의 부품류(HS 제8607호의 품목)</p> <p>(9) 철도선로 설치용 부품류(HS 제8608호의 품목 중 철도선로용의 것)</p>
---

# 공지사항

## 수입자금 지원대상 품목

### 중요물자

철 광, 고 철, 동 광, 전기동, 등 설, 아연광, 아연피, 연 광, 연 피, 알루미늄, 알루미늄피, 목재펠트

### 주요자원

임산자원 : 원목  
 농업자원 : 양곡, 원면, 원당, 생고무  
 광물자원 : 석탄, 철광석, 등광석, 원유, 금광, 은광, 장연광, 주석광, 안티모니광, 수은광, 크롬광, 티타늄광, 망간광, 니켈광, 텅스텐광, 인광, 알루미늄광, 흑연, 운모, 석면, 유황, 형석, 석회석, 규사, 우라늄광, 질코늄광, 암연, 카리광, 백금광, 코발트광, 몰티브덴강, 마그네슘광, 금강석, 고령토, 사금, 사석, 사철

## 코타(주)의 태국내 공단 개발계획 관련 안내

태국에 진출한 아국기업인 코타 社(KOTA Co.)가 추진중인 태국내 한국공단 설치계획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89. 6. 5  
 상 공 부 장 관  
 다 음

1. 코타 社가 추진중인 태국내 한국공단 설치계획은 同社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와는 무관하며,
2. 아울러 同社는 태국내 공단설치 계획 추진과 관련 정부 측과 사전 협의한 바 없으며, 현재까지 태국 정부(투자청)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임.
3. 한편 상공부는 해외공단 개발과 관련 '89. 4. 24~ 5. 13까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등 5 개국에 타당성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동조사결과를 검토중에 있는 바, 동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국 중 공단개발 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 개발 및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세양허대상 수출품 원산지 증명 발급 규정 개정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이 '88. 4. 13 유고 베오그라드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동협정에 가입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89. 6. 11 부터 관세양허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입 업체가 동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세양허대상 수출품 원산지 증명 발급 규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공부 고시 제89-19호

상공부 고시 제81-26호 관세양허대상 수출품 원산지 증명 발급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89. 6. 14  
 상 공 부 장 관

1. 제1-1조 중 “이 규정은” 다음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ESCAP개발도상국 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 다음에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을 각각 삽입한다.
2. 제1-6조 제 1 항 중 “구미시” 다음에 “천안시, 여주시, 포항시”를 각각 삽입한다.
3. 제2-2조 제 2 항 제 1 호 중 “미국”과 동항 제 2 호 “미국은 35%”는 각각 삭제한다.
4. “제 5 장” 다음에 “제 6 장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GSTP)에 관한 협정의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과 “제6-1조 내지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6-1조(원산지 증명 발급대상 품목)  
 ①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의 협정국(이하 협상국이라 함)에서 정한 관세양허 대상품목에 한한다.  
 ② 협정국에서 관세양허 대상품목을 추가 또는 삭제를 하거나 기타 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에

# 공지사항

따른다.

제6-2조(원산지 기준)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관세양허 대상품목은 다음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협정국 이외의 수입물품이 투입된 수출품 : 수출국에서 부가가치를 FOB가격의 50% 이상 부가
- ② 협정국의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입물품이 투입된 경우 : 수출국에서 부가가치를 FOB 가격의 40% 이상 부가(부가가치 통산)
- ③ 수입물품의 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당해물품이 수입되는 시점의 확인가능한 CIF 가격  
 나. 국내에서 당해물품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시 지불하는 가격

제6-3조(제출 및 확인 서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제출서류
  - 가. 원산지 증명서 3부(별표 6-1 참조)
  - 나. 기준별 사실신고서 1부(별표 2-4 참조)
- ② 확인서류
  - 가. 수출허가서 또는 승인서(또는 반출 확인서 혹은 추천서) 원본, 단 수출허가서 또는 승인서(또는 반출 확인서 혹은 추천서)가 없거나 제시가 불가한 경우는 수출면장
  - 나. 확인서류는 발급시 필요한 확인을 필한 후 신청자에게 반환한다.

제6-4조(원산지 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관세양허 원산지 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원산지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영어로 표기하되 수입자 또는 수입국 세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불어, 서반아어, 아랍어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원산지 증명서 작성은 타자 또는 필기로 하며 필기의 경우에는 잉크로써 대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여백은 사선을 그어야 한다.
- ③ 원산지 증명서의 규격은 210mm×297mm, 지질(紙質)은 Mechanical Pulp를 포함않고 중량(重量)

은 25g/m<sup>2</sup>이며 백색으로 하며, 상단으로부터 10mm, 좌단으로부터 20mm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제6-5조(원산지 증명서 발행 및 보관)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품목의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분 2부를 발행하되 부분 1부는 발급 기관에서 다른 1부는 신청자가 각각 보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8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89년도 특별외화대출 추천요령 개정 공고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102호

상공부 공고 제89-21호('89. 6. 2)에 의거, 전자·전자기부문 산업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외화대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1989. 6. 2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 1. 지원개요

가. 지원규모 : 연간 50억불(중소기업 13억불)  
 • 지원규모가 추후 증액 또는 조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나. 금 리 : 현행 외화대출금리와 동일(LIBOR + 1.5% 이내)

다. 기 간 : 10년 이내

라. 용자비용 :

- 중소기업(중견수출기업 포함) : 소요자금의 80% 이내
- 대기업 : 소요자금의 60% 이내

### 2. 지원대상

가. 시설제

-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 산업업종 투자에 소요되는 시설제
- 원화 절상,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공업 부문의 구조 조정에 소요되는 시설제
- 공산품 가격 안정을 위한 주요 공급예로 품목의 시설확장에 소요되는 시설제
- 산업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을 위한 연구기관의 연구 시설제(기자재)

# 공지사항

- 기타 산업구조 조정 및 고도화를 위해 수입이 필요한 시설재
- 3. 추천대상업종: 전자, 전기제조업
- 4. 신청서류
  - 가. 특별외화대출 추천신청서 3부
  - 나.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사본 1부
  - 다. 카탈로그 및 용도설명서 1부
  - 라. 기타 추천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중소, 중견 기업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5. 추천기준
  - 가. 제 2 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수출입공고상 수입이 허용하는지 여부 (수입제한 품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함)
  - 다. 기타 추천에 필요한 사항
- 6. 추천유효기간
  - 가. 추천서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단, 동 유효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경우 추천기관으로부터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추천서 유효기간"이라 함은 용자추천서 발급일로부터 금융기관에의 접수일까지를 말한다.
- 7. 기타: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본회공고 제99호를 폐지한다.

### 〈첨단산업용 대일수입 시설재에 대한 특별외화대출 지원 방안〉

- 가. 지원규모: 대기업용 3억불
- 나. 지원대상: 첨단산업에 소요되는 시설재로서 타지역으로의 수입선 전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대는 시설재
- 첨단산업의 범위

업종	적용범위	신청기관	비고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li> <li>• 반도체</li> <li>• 정보통신기기</li> <li>• HDTV</li> </ul>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동업종의 시설재 및 연구개발용 기자재
	제조업		

### 다. 집행방안

- 추천한도: 동일업체당 5,000만불 이내
- 신청방법
  - 구비서류: 특별외화대출 추천서
  - 신청기간: '89. 6. 15~6. 30(신청서교부는 6. 2(금)부터)
- 추천
  - 신청내용을 종합 7. 4까지 상공부 주무부에 일괄 접수
  - 7월 중순이후 상공부에서 일괄 추천

## 국제표준화기구(ISO) 가입 확대

공업진흥청은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 소위원회(Sub-Committee) 가입을 확대하고 있는 바, '89년중에도 이미 14개 TC/SC에 가입을 완료하여(표 1 참조), '89년 4월말 현재 185개 TC/SC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 자문위원회인 인증위원회(CASCO: Committee on Conformity Assessment), 개발위원회

표 1 '89년중 가입 TC/SC

TC/SC 번호	분 야	가입구분
33	내화물	P
58	가스실린더	P
104/1	콘테이너/일반용 콘테이너	P
189	세라믹 타일	P
24	채, 채가름 및 기타분급방법	O
55	망간광석 및 크롬광석	O
121	마취장치 및 의료용 호흡기	O
125	시험의 표준상태	O
155	니켈 및 니켈합금	O
156	금속 및 합금의 부패	O
173	신체장애자의 보조기기	O
176	품질보증	O
179	석재	O
181	완구의 안전성	O
계	14개	

※ P: Participating Member (참여회원)

O: Observer Member

# 공지사항

(DEVCO : Development Committee), 표준물질위원회(REMCO : Committee on Reference Materials) 및 표준화원리위원회(STACO : Committee on Standardization Principles)에도 신규 가입을 하여 장차 ISO 이사국 출마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업훈련원에서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기계 등 42개 직종에 대하여 1~3년간 국비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연간 11,000여명의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사회에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및 '90년 2월에 기능인력을 배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인력 채용에 관한 안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산하 창원기능대학 및 33개 직

1. 훈련기관별 기능인력 배출 계획
- 가. '89. 8월 수료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기관	수료예정인원	직종별 배출 예정 인원
전문훈련과정 (기능사 1급)	한백창원	165	기계공작60, 기계조립30, 금형15, 용접30, 판금15, 기계설계15
일반훈련과정 (기능사 2급)	정수	370	선반25, 기계조립10, 밀링30, 용접45, 건축배관30, 중기정비30, 전기기기30, 전자30, 목공예30, 가구제작30, 도자기공예30, 수자수20, 기계자수30

## 2. 훈련기관별 소재지

훈련기관	훈련과정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취업담당자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본부	121-757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02) 715-3212	교 416
창원기능대학	기능장	641-030	경남 창원시 중앙동 110	(0551) 82-5141	박 경 호
중앙 직업훈련원	전문	403-120	인천시 북구 구산동 산47	(032) 93-9602	박 영 용
정수	"	140-220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38	(02) 795-3467	차 대 룡
한독부산 직업훈련원	고등	607-060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53-8	(051) 555-0805	박 노 용
부산	"	616-100	부산시 북구 덕천동 14	(051) 332-2131	주 동 인
대구	"	703-010	대구시 서구 평리동 1495	(053) 52-0101	오 대 희
인천	"	402-205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1-54	(032) 864-8081	서 교 석
성남	"	461-144	경기 성남시 단대 4동 4969	(0342) 49-3371	최 명 훈
춘천	"	200-160	강원 춘천시 후평동 290-1	(0361) 54-7781	조 성 환
원주	"	220-130	강원 원주시 우산동 161	(0371) 42-8691	김 정 환
청주	"	360-290	충북 청주시 송정동 28	(0431) 62-7204	조 형 섭
충주	"	380-240	충북 충주시 목행동 240	(0441) 42-0321	허 성 준
대전	"	300-090	충남 대전시 동구 가양 2동 99-1	(042) 623-1802	황 교 선
홍성	"	350-800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75	(0451) 32-5141	박 영 현
전주	"	560-200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742	(0652) 4-5011	류 경 주
이리	"	570-210	전북 이리시 어양동 10	(0653) 52-2106	김 동 하
광주	"	500-170	광주시 북구 운암동 58-1	(062) 525-0443	문 성 식
목포	"	530-400	전남 목포시 석현동 1175	(0631) 5-1864	임 동 업
순천	"	540-320	전남 순천시 조례동 435-2	(0661) 741-7171	권 대 주
구미	"	730-030	경북 구미시 공단동 112	(0546) 2-5181	송 득 중
김천	"	740-200	경북 김천시 삼락동 24-1	(0547) 32-6174	김 동 철
포항	"	790-300	경북 포항시 괴동동 75	(0562) 72-0702	박 병 수
영주	"	750-020	경북 영주시 가흥 1동 213	(0572) 33-4861	유 재 천
한백창원	"	641-031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5-2	(0551) 82-4581	배 철 민

# 공지사항

훈 련 기 관	훈련과정	우편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취업담당자
진 주 "	일 반	660-330	경남 진주시 하대동 105	(0591) 52-9901	홍 장 락
울 산 "	전 문	681-280	경남 울산시 동동 81	(0522) 93-4581	정 성 태
경 기 "	일 반	132-030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43-3	(02) 908-0279	이 효 근
강 원 "	일 반	200-150	강원 춘천시 우두동 72	(0361) 51-4001	김 인 배
충 북 "	일 반	383-880	충북 증원군 주덕면 삼청리 220	(0441) 44-8766	이 성 해
충 남 "	일 반	320-860	충남 논산군 부적면 마구평리 산1-11	(0461) 32-7012	박 영 규
전 북 "	일 반	570-160	전북 이리시 영등동 224-4	(0653) 2-2443	유 재 복
전 남 "	일 반	500-150	광주시 북구 매곡동 238-1	(062) 56-8553	김 동 규
경 북 "	일 반	702-320	대구시 북구 동호동 504	(053) 30-7213	윤 종 익
제 주 "	일 반	690-170	제주도 제주시 연동 324-10	(064) 42-5302	홍 성 수

## '89 쿠웨이트 한국상품 종합전시회 참가 안내

KOTRA는 중동제국 중계무역 중심지로서 최근 이란-이라크전 종료이후 경기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쿠웨이트 시장진출 심화 및 對 이란·이라크 지역 우회진출 거점확보를 위하여 한국상품 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업체의 많은 참가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전시회 개요

- 명 칭 : '89 쿠웨이트 한국상품 전시회  
(Korea Trade Exhibition, Kuwait '89)
- 기 간 : '89. 10. 16~19 (5일간)
- 장 소 : Kuwait International Hotel
- 규 모 : 500 S/M
- 바이어 유치 활동 : 현지 매체를 통한 광범위한 홍보 / 유망 바이어 개별초청, C/L 발송, 인근국 주재 무역관의 바이어 유치

### 2. 출품 유망품목

자동차 및 동부품, 섬유 및 직물, 전기·전자제품, 주방용품, 완구류, 문구류, 운동용구류, 가구류, 신변 장신구, 가방 등 종합품목

### 3. 신청 요령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KOTRA양식),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전시품 카탈로그 2부, 참가비 입금증 사본 1부
- 신청면적 : 기본 부스 (3m x 3m) 단위로 신청

### 4. 참가업체 지원사항

전시장 임차 및 전시장치 지원, 전시품발송 통관지원, 현지홍보, 거래알선지원, 기타 행정지원

- 참가비 { 대 기 업 : 912,000원 / 무스당(잠정)  
          중소기업 : 730,000원
- 신청기한 : '89. 6. 30
- 신청처 : KOTRA 전시부 국제박람회과  
(전화 551-4405/6)

## 중소기업진흥공단 자료회원 가입 안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사업의 일환으로 '89년 7월부터 자료회원제를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자료회원에 가입하시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보제공사업의 일환으로 발간, 배포하는 각종 간행물을 통해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중소기업체(계열, 모기업 포함), 기관(단체), 개인 등
- 제공간행물명  
중소기업진흥(월간), 중소기업기술정보(월간), 기타 등
- 가입요령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회비와 함께 신청

# 공지사항

- 회 비 : 1 구좌당 연간 30,000원
- 회비납부방법 : 지로용지를 사용, 가까운 은행 99번(지로)창구에 납부

• 기 타

회원관리 전산화 관계로 시간이 필요하오니 가능한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처

- 본부 : 정보조사부 / (02) - 783 - 9611~8  
(교)312~314
- 지부 : 부산·경남 / (051) 463 - 0265~6  
대전·충남 / (042) 255 - 1411~2  
광주·전남 / (062) 364 - 5701~2  
충 북 / (0431) 65 - 7611~2  
대구·경북 / (053) 756 - 2955~6  
전 북 / (0652) 86 - 2811~2

## 제10회 노동문화제 작품 현상공모 안내

근로복지공사는 1,000만 근로자의 공공복지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그 동안 노동부가 전국 260만 근로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노사협조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980년 이래 매년 주관 시행하여 온 바 있는 노동문화제 행사를 지난 1987년 제8회 대회부터 수입받아 귀사(원·회·소·행·센터·공단·관·연맹·그룹)을 비롯 노·사·정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동행사를 순조롭게 치루어 왔습니다.

따라서 同공사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동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공익언론기관인 한국방송공사와 기존의 노동문화제 행사 이외에 노동문화 진흥 심포지움('89. 6. 28), 노동문화 백일장 및 사생대회('89. 10. 1), 노동문화 동서교류전('89. 11. 10), 노동문화의밤 순회공연('89. 12. 2) 등 다채로운 행사를 공동개최함으로써 동행사가 명실상부한 근로자들의 종합예술문화 축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올해 제10회 노동문화제의 작품 현상공모를 안내하오니 업체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사(TEL. 634 - 9131)

## '89 나이로비 국제박람회 참가 안내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는 '89 나이로비 국제박람회에 다음과 같이 한국관으로 참가할 예정이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 박람회 개요

- 명 칭 : '89 나이로비 국제박람회(Nairobi International Show)
- 기 간 : '89. 9. 26~10. 1 (6일간)
- 장 소 : 나이로비, Jamhuri Park Show
- 규 모 : 29,600m<sup>2</sup>
- 성 격 : 1902년 이래 매년 개최되는 동남부 아프리카의 최대 종합박람회

• 한국 참가개요

- 연 령 : '80년부터 '84년까지 5회 참가
- 참가규모 : 150m<sup>2</sup> (10개 업체내외)
- 출품유망품목 : 자동차 및 동부품, TV, 라디오 및 전자시계 등 전자제품, 농기계, 인쇄기계, 화장지 제조기계, 파이프 제조기계, 재봉기계, 의약품 등

• 참 가 비 : 추후확정, 통보 예정

• 신청요령 : 코트라 소정 참가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코트라 국제박람회과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기한 : '89. 7. 7 (금)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출품 예정 카달로그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가비 입금증 사본 1부

• 참가업체 지원사항 : 전시품 발송 및 통관협조, 전시장 임차 및 전시장치 지원, 현지홍보 및 거래알선지원, 기타 행정지원

• 문의처 : 코트라 전시부 국제박람회과  
(전화 : 551 - 4402 / 담당자 : 오웅천)

## 국제 광 응용 전자박람회 '89(INTEROPTO '89)

• 전시기간 : 1989. 7. 19(수) ~ 7. 22(토)



# 공지사항

- 장 소 : 동경 Sunshine City Convention Center
- 주 최 : (재단법인) 광산업기술진흥협회(OITDA)
- 후 원 : 일본통상산업성(MITI),  
일본무역진흥회(JETRO),  
(재)제품수입촉진협회(MIPRO),  
주일의국대사관

[문의처] 하이테크 정보 : TEL. 588-8922(대)  
담당 전동근  
해외교류 연구소 : TEL. 927-8891(대)  
733-4368(담당)

## 〈INTEROPTO '89 전시대상〉

1. 광부품, 소자, 모듈: 반도체 레이저, Hs-Ne 레이저, AR 레이저, 탄산가스 레이저, Excimer 레이저, Ruby 레이저, Giass 레이저, Yag 레이저, 색소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포토 다이오드, 태양전지, 광섬유 코넥터, 광회로 부품 등
  2. 광 응용정보, 통신장치: 이미지 입력장치, LED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광 디스크 광전송기기 및 장치 등
  3. 광 응용 시스템: 광 통신 시스템, 광 응용 계측제어 시스템, CATV, 비디오 시스템, 광 응용 정보 시스템, 광 링크, LAN, 의료용 레이저 시스템, 상업용 레이저 시스템, 광응용 디스 플레이
  4. 광 응용 계측장치: 광 섬유 응용 센서, 레이저 응용 계측장치 등
  5. 광학 부품: 렌즈, 미러, 광학 필터, 기타 광학부품 등
  6. 재료: 접착제, 결정, 글라스, 액정, 냉각제, 색각, 감광제 등
  7. 광산업 지원보조: 세정장치, 정밀위치 결정장치, Splicers, 코팅 장치, 연마장치, 기타 광부품 생산장치, 광기술관련 각종계측, 시험장치, 제진대(Vibration Isolators) 보호 책, 보호안경, 전원, 교환기기, 가스 충전장치, 진공펌프 등
- 전시규모: 183개 업체, 529개 Booth('88년 보고)

공업진흥청에서는 여름철용품인 전기냉각기(에어콘), 전기냉온수기, 전기훈증 살충기 등 6개품목에 대한 국산품간 또는 국산품과 수입품간 품질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품목별 그 평가결과를 보면, 본격적 수요 절을 앞두고 있는 전기냉방기(에어콘)의 경우 금성, 대우, 삼성전자 제품이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품질항목에 따라 냉방 성능에서는 대우전자 제품이, 습기를 제거하는 성능에서는 금성사와 대우전자 제품이, 소음의 크기에서는 대우전자와 삼성전자 제품이 상대적으로 다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에 물을 항상 차게해서 마실 수 있게 하는 전기냉수기의 경우, (겨울철에는 온수기로 기능), 업체별로 항목에 따라 품질 차이가 나는데, 삼성전자 제품은 물의 냉각 성능은 상대적으로 우수한데 반해 온수 성능은 미흡했고, (주)삼아와 대우전자 제품은 냉각 성능에서는 뒤지는 반면 온수성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여름철에 무색, 무취의 가스로 모기와 해충을 잡는 전기훈증 살충기의 경우 소비자들이 염려하는 만큼 사용상의 위험이나 품질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제품이 발열부의 온도분포가 보다 고르게 되도록 품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소형진공청소기(Hand-Held Type)의 경우는 이번에 평가한 5개업체 전부 소음을 더욱 더 줄이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금성사와 우림정밀 제품은 흡입률이 표시치보다 다소 뒤졌고, 우림정밀 제품은 코드의 단선율이 다소 높았고, 삼영전기제품은 전기적 잡음(전계) 발생이 제일 심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가정의 전압을 조정하는 전압조정기는 전 업체가 KS 기준에는 만족하는 수준이었으나, 항목에 따라 업체간 품질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업체에서는 품질미흡 사항에 대해 품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같은 것을 탈 때 눈이나 얼굴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승차용 눈보호구의 경우는 이번에 평가한 일본 제품을 포함한 7개 업체 제품전부가 정부에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고 "검"자표시가 된 제품의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품질비교 평가결과 안내